연구총서 01-28

“남북환경공동체” 형성 방안

손 기 웅

통 일 연 구 원

요 약

한반도에서 남북한주민들이 그리고 그 후세들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환경공동체」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환경개선·보호·관리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분야 교류·협력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Ⅰ. 남북환경공동체의 의미

<민족공동체의 의의>

통일은 그 자체도 중요하나 통일에 이르는 중간과정이 통일을 이룩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때 통일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통일한국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전 단계로서 민족공동체의 형성은 가장 바람직한 통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필수조건이다. 남북한간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민족공동체의 형성이 요구되며, 우선 서로가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부터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분야이다. 왜냐하면 현재 남북한은 동일한 환경공간 속에서 살고 있고, 각각의 환경문제 외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동의 환경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환경공동체의 개념>

남북환경공동체는 “환경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추가적인 환경협력사업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상호 신뢰구축과 공동이

익의 범위를 넓혀 남북간 환경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되는 제도적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의 목적은 남북한 각각이 지니고 있는 환경능력을 시너지화하여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공동이익의 창출과 신뢰를 증진하는 등 남북관계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있다. 남북환경공동체를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전제하면서도 남북한이 상호간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심화시킴으로써 남북한의 제도·질서가 질적 변화를 이루어지는 기반 하에서 남북 주민들이 환경적 공동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하되, 그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남북한 주민들이, 그 후세들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데 있다.

<남북환경공동체의 민족적 의의>

남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서 통일이 놓여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좀더 잘 살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과 아울러 이를 지속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보완해주는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북환경공동체의 추진은 선진민주사회의 건설, 평화공존과 통일을 압축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민족적 과제에 실천적으로 부응하는 일이다. 하루라도 빨리 한반도가 인간다운 삶의 터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통일의 과정에서 정치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사회적 측면 →

산업적 측면 → 환경적 측면으로 이어지는 선진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 현실화를 앞당길 수 있으며, 그 질적 토대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다.

II. 남북환경공동체의 기본방향

<기본원칙>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환경협력분야의 선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병행 추진, 수요자중심의 환경협력, 단계적 환경협력, NGOs와 국제기구·단체를 활용하는 다각적 환경협력, 환경친화적 남북경협 추진,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적극 활용 등이다.

<추진구도>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에는 중·대만사례가 보여주듯이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분야에서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기능적인 통합을 우선하고, 관계의 심화과정에서 EU의 사례와 같이 제도적인 공동체 형성을 이끌어내는, 두 사례를 종합적으로 원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과정을 상호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수준에 따라, 환경분야 남북 교류·협력 심화의 정도에 따라, 남북한 정치적 환경의 개선에 따라 "제1단계: 남북환경공동체 준비기 → 제2단계: 남북환경공동체 심화기 → 제3단계: 남북환경공동체 완성기" 순으로 추진한다.

<재정조달>

남북환경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소요될 재원의 확보는 다음의 방안을 고려한다. 첫째, 한반도 환경보호·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내적 준비, 남북 환경교류·협력사업 추진, 통일 이후 환경통합 대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남북환경기금」의 조성을 추진한다. 둘째, 남북경협에 따른 오염예상산업에 대해 환경개선세와 같은 조세를 신설한다. 셋째, 선진국으로부터 환경차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넷째, GEF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활용하거나, World Bank, IBRD, ADB 혹은 국제금융공사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재원조달을 추진한다.

III. 남북환경공동체의 제도적 틀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남북환경공동체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틀 내에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세부적으로 협의할 공동틀인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상호 합의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는 남북의 민간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반민·반관 형식으로 구성하되, 관심있는 국제기구·국제 NGOs를 참여시킨다. 위원회의 목적은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의의 확산,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활성화,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등에 있으며, 조직은 총회, 이사회, 임원, 분과위원회(교류·협력분과위, 연구·자문분과위, 후원·홍보분과위), 환경자료정보센터,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한편 아직 남북 환경교류·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체계적인 환경교류·협력을 준비하며,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환경교류·

협력을 추진·지원하기 위한 「한반도지속가능발전남측위원회」를 국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측위원회의 출범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요청하여 명실공히 남북한이 참여하는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발족후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 환경교류·협력을 추진하며, 「한반도환경공동체선언」과 「남북환경협정」의 채택을 논의한다. 한편 정부는 정기적인 「남북환경장관회의」를 통한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성사와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의회환경포럼>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이를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입법부인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의 관련 위원회 및 의원간에 공동협력의 틀인 「남북의회환경포럼」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다. 의회환경포럼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인간과 자연간의 연대를 회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공동체를 건설하는데 남북의회가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아직 남북 환경교류·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국회내에 우선 국내적으로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준비하며, 국제적 차원에서도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국회남북환경포럼」을 구성·운영한다. 「국회남북환경포럼」이 출범후 수행해야할 주요 우선사업은 「남북환경협정」의 준비, 「한반도지속가능발전남측위원회」의 지원, 남북당국에 대한 환경협의 정례화 촉구, 「남북환경기금」의 준비 등이다.

<남북환경협정>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을 제도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통합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환경교류·협력의 기본틀이 될 「남북환경협정」이 채택되어야 한다. 「남북환경협정」의 검토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원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한반도 차원의 남북 양자간 환경분야 교류·협력은 물론 지역적,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양자간 환경교류·협력도 명시한다. 둘째, 정부, 민간 사회단체, 개인 등 환경교류·협력의 주체를 다양화한다. 셋째, 환경문제의 개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환경교류·협력도 포함한다. 넷째, 환경교류·협력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조직체의 구성과 시행약정의 체결을 명시한다.

Ⅳ. 남북환경공동체를 위한 통일화사업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

환경분야에서 남북한은 용어상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식물의 이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기본 개념, 학술적 용어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의 편찬은 남북한 환경교류·협력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교류·협력의 내용과 질을 고도화시키면서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통일이후의 언어통합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은 단순히 남북환경협력의 활성화란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이질성 극복과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은 남북 및 해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통일용어사전이 되도록 하며, 사전의 편찬을 1회적이거나 한시적으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계속 수정·증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남북환경측정단위·방법통일>

남북한은 현재 상이한 환경측정단위·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상호 공감대 형성은 물론 서로의 환경정보 및 그 해석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없다. 상이한 용어 및 측정단위·방법의 바탕 위에 발표되고 있는 남북의 관련 정보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상호 인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남북 환경교류·협력이 의미를 가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통일이 필수적이다.

「남북환경측정단위·방법통일」은 한반도 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사업으로서 통일된 환경측정단위, 측정방법의 안출을 통해 환경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보호·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남북의 계량적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남북환경네트워크>

「남북환경네트워크」 형성의 목적은 남북한이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자연과 인간의 연대를 회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공동체의 건설을 촉진하는데 있다. 「남북환경네트워크」의 형성과정에서 환경측정단위, 환경용어 등의 표준화와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환경분야 교류·협력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환경통합에 대비할 수 있다. 「남북환경네트워크」의 중점사업은 「남북지방환경네트워크」, 「남북환경정보네트워크」, 「남북산성비측정네트워크」, 「남북생물다양성조사네트워크」 등이다.

Ⅴ. 남북환경공동체를 위한 남북경협

<한반도청정개발체제>

한국은 1999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연간 4억 1천만톤이나 배출해 세계 10위를 차지하였고, 10년내에 세계 7위의 배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조속히 동참하라는 선진국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재정적 지원이 보장되는 개도국으로써 "청정개발체제"에 참여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여, 국내실정에 부합하는 의무감축량을 자발적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한반도청정개발체제(Korea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국가정책방향이라 판단된다. 즉 향후 남한이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속서 I 국가, 북한이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개도국이 될 것이라는 가정아래, 대기분야에서 KCDM을 중·장기적인 남북환경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KCDM 형성을 위해 남북환경협력을 에너지효율성 증대사업, 에너지공급 증대사업, 해외조림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유기비료 대북지원>

현재 남한에는 축분, 음식물쓰레기, 슬러지 등과 같은 유기물질이 너무 많아서 수질 및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에서는 그와 같은 유기물질이 너무 적어서 토지의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 농업은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다. 남북이 처한 농업의 어려움은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고려에서 남북한이 맞고 있는 농업위기를 상호 협력적 관계로 해결하기 위해 남

한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과 같은 다량의 유기성폐자원을 유기비료화하여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이 남북한간에 자원순환형 농촌공동체를 형성하여 북한의 식량증산과 한반도환경개선에 적극 이바지하는,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한다.

<북한 환경인프라 개선과 재활용품 지원>

현재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상수도, 하수도, 폐수처리장 등 환경인프라시설이 절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도시와 남북한의 경협공단에 환경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북한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한편 북한은 자원난으로 인한 높은 재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폐생필품 자체가 부족하다. 이를 감안하여 남북을 연계하는 자원순환형 환경공동체형성의 시범사업으로서 북한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남한내 환경개선을 위해 적체된 각종 재활용 생활용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목 차 -

Ⅰ. 서론 ····· 1

Ⅱ. 남북환경공동체의 의미 ····· 6

1. 민족공동체의 의의 ····· 6

2. 남북환경공동체의 개념 ····· 9

3. 남북환경공동체의 민족적 의의 ····· 11

Ⅲ. 남북환경공동체의 기본방향 ····· 20

1. 기본원칙 ····· 20

2. 추진구도 ····· 23

3. 재정조달 ····· 29

Ⅳ. 남북환경공동체의 제도적 틀 ····· 33

1.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 33

2. 남북의회환경포럼 ····· 38

3. 남북환경협정 ····· 40

Ⅴ. 남북환경공동체를 위한 통일화사업 ····· 44

1.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 ····· 44

2. 남북환경측정단위·방법통일 ····· 54

3. 남북환경네트워크 ····· 56

Ⅵ. 남북환경공동체를 위한 남북경협 ····· 63

1. 한반도청정개발체제 ····· 63

2. 유기비료 대북지원 ····· 68

3. 북한 환경인프라 개선과 재활용품 지원 ····· 70

Ⅶ. 결론 ····· 73

참고문헌 ····· 76

- 표 목 차 -

<표 1> 남북환경공동체 추진구도 ····· 26

<표 2>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안) ····· 35

<표 3>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구(안) ····· 37

<표 4> 남북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안) ····· 41

<표 5> 남북한 조류학 용어비교 ····· 45

<표 6> 남북한 식물학 용어 비교 ····· 45

<표 7>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 편찬사업 추진구도 ····· 49

<표 8>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편찬공동위원회 조직(안) ····· 50

<표 9> 남북환경측정단위·방법통일 추진과정 ····· 56

<표 10>「남북환경네트워크」추진과정 ····· 57

<표 11> 한반도청정개발체제 의의와 편익 ····· 67

Ⅰ. 서 론

환경오염과 파괴, 그리고 그것과 결부된 사회적 혼란은 오늘날 전 지구적 문제이며, 남북한도 이러한 현실에서 예외가 아니다. 극심한 산림파괴, 두만강 및 압록강의 오염 등으로 환경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북한에서 경제가 회생되어 산업이 제대로 가동될 경우에는 환경문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북한 환경문제의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북한당국이 추진했던 정책의 실패에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적인 동기부여의 부재, 환경보호에 앞선 생산할당량 달성의 강조, 시장기제 및 시장가격 부재에 따른 환경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경제적 유인의 부재, 폐쇄적 경제운영의 결과 환경보호에 있어서 기술 및 인력의 국제적 교류·협력으로부터의 소외, 경제력 약화로 환경분야 투자여력의 결여, 환경관리조직의 경직성, 환경관련 NGOs의 결여, 사회전반적 환경의식의 결여 등이 북한체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비생태적 측면이다. 여기에 더하여 환경적 고려없이 국가적으로 추진하였던 무리한 중공업화정책, 4대 군사노선에 바탕을 둔 군사화정책, 무분별한 다락밭 건설 및 간석지개간 등의 주요 정책들이 환경손상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1)]

한편 한국도 현재 사회구조적인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 산업화과정에서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남한의 환경문제는 부차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문제의 심각성은 경제발전의 양적 성장 밑에서 급속히 악화되어 갔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확산과 이로 인한 사회전체의 구조

1) 손기웅, "북한 환경문화 연구: 환경정책과 환경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99~202; 『북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농업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서울: 통일연구원, 1997) 참조.

적 변화는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의 다양한 문제로 연결되었으며, 성장 위주의 정책은 대기·수질·폐기물 등의 오염문제를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 재생산시키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오염 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한 생활오염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의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접근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물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문제의 개선은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결국 남북한에 내재한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는 상호 공동협력을 통한 접근가능성이 큰 교류·협력의 무대가 될 수 있다. 한반도가 남북한주민이, 그리고 그 후세들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한반도 주민의 생활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여부와 관계없이 상호 교류·협력하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필요성 외에, 환경분야에 있어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실천성이 높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환경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은 정치·군사적, 혹은 경제적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Zero-Sum”이 아니라 “Positive Sum” 분야라는 사실이다.

둘째, 한반도의 환경문제는 지역에 따라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공통의 문제이며, 따라서 환경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상호 협력할 때 그 효과는 더욱 제고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오는 황사현상이나 월경성 대기오염에 의한 산성비 문제에서 보듯이 환경문제는 남북한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

니다.

셋째, 환경문제는 향후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할 전지구적인 문제이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공동대응은 그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경제력과 기술력, 체제내적 역량을 비추어 볼 때 환경문제를 자력으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에게 필요한 기술과 재정적 지원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구상에 입각하여 상호 교류·협력을 추구하려는 한국이라는 사실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환경분야에 있어서 남북한 교류·협력은 이념·체제간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통의 삶의 터전을 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서로의 이해에 부합하는 분야이다. 동일한 생태공간, 생태축으로 연결된 한반도에 있어서 환경문제 해결의 노력이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될 경우, 그 시너지효과를 통해 한반도 환경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또한 환경분야는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학계, NGOs와 연계한 협력방안은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선도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결국 환경분야는 상호이익의 바탕위에 남북한이 교류·협력의 접촉점·접촉선·접촉면·접촉공간을 확대하여 평화공존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남북한 주민 서로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와 한반도 생태계에도 이익이 되는,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내용을 넓히고 질을 높이는 실천적인 무대가 될 수 있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이 환경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여기에 더하여 김정일 위원장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함에 따라 환경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

이러한 기본인식 아래 이 글에서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주민들이 그리고 그 후세들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환경공동체」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환경개선·보호·관리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분야 교류·협력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남북환경공동체는 그 형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실천을 위한 방안 모색은 물론이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나 인식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환경공동체에 이르는 전

2)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공동선언에서 합의하였다. 환경부는 정상회담 직후 가능한 남북 환경협력사업으로 비무장지대 공동조사, 국립공원 협력사업(양측 국립공원에 대한 자료교류 및 관리, 국립공원내 유명산 자매결연 추진 등), 시베리아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날아오는 황새 등 철새이동경로 조사, 동북아환경협력 틀에 대한 북한 참여 유도, 개발 및 공장증가에 따른 해양오염 실태 조사, 수질보전협력 방안 및 장거리이동물질 공동 연구,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금년에 들어서는 UNDP 주도하의 두만강 유역 환경보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남북 환경협력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보전전략 실천계획 수립, 국경간 진단분석, 오염실태조사, 환경정보체계 구축, 환경인식증진 등 5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될 이 사업에 환경부는 북한의 참여가 구체화될 경우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언론, 기업 등이 참여하는 “두만강 유역 환경보전사업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UNESCO와 협력하여 금년 3월부터 비무장지대내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사단법인 평화의 숲이 북한의 산림복구와 관련하여 협력사업을, 그리고 녹색연합은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등을 통해 남북간 생태축을 연결하는 이른바 백두대간 보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체적인 과정과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남북 환경교류·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며, 남북 환경교류·협력이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이라는 정책목표하에서 단계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연구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로서 남북환경공동체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 틀로서 기본원칙과 추진구도를 살펴본다. 셋째, 남북환경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제시한다. 넷째,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을 중점분야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별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 글은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평화공존의 구축을 촉진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내용을 보완하고 질적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비용을 절감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 세부적인 남북환경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남북 환경협력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에게, 남북환경협력을 추진하는 NGOs에 의해 지침서로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남북환경공동체의 의미

1. 민족공동체의 의의

이론적으로 남북한간 최선의 통일 형태는 모든 분단된 것의 재결합 수준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민족전체의 공동선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단일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무력통일이나 어느 일방의 급격한 붕괴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남북관계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통일이 당장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도 그 개연성이 매우 낮다.

독일통일의 경험이 한반도에 주는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이질적인 체제하에서 사회화과정을 거친 분단된 지역주민들간에 민족정체성의 분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이후에 심각한 국민통합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의 통일은 민족사적 관점에 입각한 통일의 당위성과 시대적 사명, 남북관계의 현실, 국제정치·경제질서 및 환경의 변화, 그리고 통일된 조국에 대한 비전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통일정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현실주의적인 통일관이 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적 운명을 살아왔던 남북한의 우리 민족이 서로에게 어울리면서 민족 전체의 차원에서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공동체(Community)”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통일접근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어려운 통일문제를 앞세우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협력의 상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통일이 단순히 분단된 남북한의 물리

적이며 공간적인 결합을 달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합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공동체란 구성원들이 비교적 동질적인 신념과 가치관의 공유를 바탕으로 직접적이고 다면적인 상호관계를 가지며 호혜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3] 그러나 반세기 이상 지속된 남북한의 독자적인 발전의 길은 신념과 가치관의 공유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를 낳았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는 남북한 주민에게 면면히 지속되고 있는 동질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민족 전체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통하여 전체 한민족의 삶의 질을 한단계 격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무력을 통한 통일이나 북한의 급변사태에 기인한 통일은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이후에도 심각한 부작용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한민족의 삶을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그 자체도 중요하나 통일에 이르는 중간과정이 통일을 이룩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때 통일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통일한국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전 단계로서 민족공동체의 형성[4]이 필요하

---

3) Michael Taylor, *Community, Anarchy and Liber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4)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으면서 실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경제분야에서의 공동체, 즉 「민족경제공동체」이다. 경제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체제 및 이념의 상이성에 기인하는 제약이

다. 민족공동체는 교류·협력 심화의 결과이자 교류·협력 증진의 중간 목표라 할 수 있다. 교류·협력의 장기적, 거시적인 목표는 이질성 해소를 통한 원만한 통일 기반의 구축이다. 남북한간의 이질성 해소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의 민족공동체의 형성이 요구되므로 민족공동체의 형성은 가장 바람직한 통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필수조건이다.[5)]

그런데 남북한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사회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반세기 이상의 극단적인 반목과 대결구도 속에서 제도상의 차이와 불균형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양식, 전통에 대한 이해, 가치관 등이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차이를 하루아침에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먼저 서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부터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분야로 지적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남북한은 동일한 환경공간 속에서 살고 있고, 각각의 환경문제 외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환경문제를 겪고 있다. 그 결과 환경분야에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가질 수 있는 환경협력의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상황을 조금씩 발전시키면 공동의 이익을 더욱 넓혀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물론 환경공동체로 발전할 현실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교류·협력의 현실적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었고, 특히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남북 경제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현 정부 이후 그 가시적 진전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관심과 논의, 그 세부적 추진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5) 손기웅·박영호, “남북경제공동체 의의·개념 및 향후 추진방안: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협의 준비위원회,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방안」(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 2000.2.18), pp. 10~12 참조.

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남북환경공동체의 개념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그 기반은 같은 민족이나 종교와 언어, 역사 등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제도의 동질성에 있다. 민족경제공동체를 일반적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감(Identity)에 바탕을 두고 경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한다면, 남북환경공동체는 동일한 환경적 공간 속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남북한간 어떠한 공동체 형성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 남북한이 아직 각각 상이한 제도와 질서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공동체의 개념을 선택적·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통일 이전으로부터 이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추진되어야 할 목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남북환경공동체는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전제하면서도 공존공영의 원칙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한 환경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킴과 동시에 남북한 환경적 결합도가 점진적으로 제고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다양한 환경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함으로써 남북한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간 공동이익의 창출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협력의 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단일 환경권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남북환경공동체는 완전한 환경통합을 이루기까지의 중간과정으로서 일련의 환경통합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환경공동체는 “환경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

의 물꼬를 트고 추가적인 환경협력사업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상호 신뢰구축과 공동이익의 범위를 넓혀 남북간 환경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되는 제도적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의 목적은 남북한 각각이 지니고 있는 환경능력을 시너지화하여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공동이익의 창출과 신뢰를 증진하는 등 남북관계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있다. 남북환경공동체를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전제하면서도 남북한이 상호간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심화시킴으로써 남북한의 제도·질서가 질적 변화를 이루어지는 기반 하에서 남북 주민들이 환경적 공동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하되, 그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남북한 주민들이, 그 후세들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데 있다.

환경적 공동가치를 향한 남북한 공동체 구축은 남북한 모두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동시에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다. 이는 과거의 이념적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내적 경계를 외부로 확장하여 모든 세계인들에게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환경공동체는 상호간의 환경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면서 공동의 환경이데올로기를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

---

6) 김정훈은 “21세기 남북한 환경공동체 건설의 방향성”(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에서 시민사회간 공동선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의 필연성을 논의하고 있다.

3. 남북환경공동체의 민족적 의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 상호간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민족공동체를 향한 다양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또다른 분수령을 이루었다. 단순한 교류·협력이 경제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한민족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어떠한 과제들이 양측에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양측의 공공성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함께 찾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즉 남한과 북한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의 극대화와 함께, 체제와 이념을 넘어선 민족전체의 공공성을 함께 찾는 일, 남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동시에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세대에까지 이롭게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은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도 그 이익이 함께 향유될 수 있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남북환경공동체는 남북관계에서, 민족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의 실마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우리사회에 대한 천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의 사회는 어떠한 성격과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서 남북환경공동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남북환경공동체란 장기적인 민족적 과제의 출발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형성이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추진

되어야 할 장기적인 통합의 과정을 의미함에 비추어 볼 때 남북환경공동체가 통일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가질 때 환경공동체에 관한 논의의 출발이 민족사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남북한 평화공존과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이유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남북한 주민들이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이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족적·역사적 문화전통을 이어가고 더욱 가꾸며, 경제적 토대를 굳건히 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남북한이 힘을 합쳐 부국(富國)에 힘을 쏟아도 모자라는 형편에 민족간의 대립으로 인적·물적·정신적 자원을 낭비하는 현실을 타개하는 등등의 국내적 이유로, 좁게는 동북아지역에서 넓게는 지구적 차원에서 국가와 국가가, 민족과 민족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번영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국제적 이유로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 좀 더 잘 살 수 있고 또한 다른 민족들이 좀 더 잘 사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공존을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바로 더불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행복을 키워나가는 노력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우리가 추진해야 할 단·중·장기적 대북 및 통일정책은 바로 “좀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러한 사회에, 그러한 사회건설을 위한 노력에 남북한이 함께 하는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국제사회가, 다른 민족이 지지하고 나아가 동참하게 하는데” 등을 위한 노력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것이 새천년을 맞이한 현재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평화공존,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이끌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무

엇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를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민주사회(先進民主社會)"로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정신적·물질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선진민주사회는 민주주의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구현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여러가지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 평등성을 상대적으로 확보해 나가려는 이념"이라고 간략히 규정한다면, 선진민주사회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정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제 차원, 즉 경제적·사회적·산업적, 나아가 환경적 차원에서 성숙시켜 나갈 때, 다시 말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환경요소의 모든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나갈때 이룩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주성이 확보되는 사회가 선진민주사회이다. 민주주의란 어원적으로 고대 B.C. 4~5세기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행하여졌던 "국민자치(國民自治)"란 정치형태를 의미한다. 모든 도시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 동시에 도시국민으로서 피지배의 의무를 분담하였던, 지배와 피지배의 주체가 동일한 정치형태가 민주주의였다.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이념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게 된 민주주의는 근대 민족국가의 등장과 자본주의의 발전이란 변화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직접민주주의보다 간접민주주의의 현실성이 부각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대의제를 기초로 한 의회민주주의가 일반화되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보통선거권과 정치참여권, 정당의 경쟁성, 정권에 대한 견제성, 공정한 선거제도 등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인권 및 정치적 자유의 확보가 민주주의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성이 유지될때 그 사회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정치적 측면에서 선진민주사회가 구현되는 것이다.

선진민주사회의 두번째 구성요소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민주성 확보이다. 사회구성원간에 경제적 부의 상대적 평등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의 민주성, 구체적으로 말해 경제적 기회에 있어서 출발의 평등성도 상대적으로 구현되는 사회가 선진민주사회이다. 시장경제질서를 전제할때 각자는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자신의 경제환경을 무한히 이룩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부의 편차가 극도로 심해지고, 부의 편차에 따라 경제적 기회의 출발에 있어서도 극도의 편차가 존재한다면 부의 창조과정과 사회적 부에 대한 정당성은 의문시될 것이며, 그 결과 사회적 부의 총합은 물론 경제환경의 질적 수준도 증가될 수 없다. 따라서 부의 적절한 사회적 환원을 통해 사회구성원간 경제적 평등성은 물론 구성원이 가지는 경제적 기회의 출발에 있어서도 평등성을 상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될 때 상대적 부에 대한 사회적 동의는 더욱 다져질 것이다. 이러할 때 사회의 총체적 부가 증가됨은 물론 경제환경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민주화는 선진민주사회의 세번째 구성요소이다. 이것은 사회구성원,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민주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구성원이 사회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더라도,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출신지역과 나이를 불문하고 각자는 고유한 인격의 주체로서 존경을 받아야 하며, 그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구성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출신지역에 따라 각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좌우된다고 한다면 사회적 측면에서 민주성은 확보될 수 없다. 따라서 직업, 성(性), 나이, 그리고 지역과 무관하게 국민 모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품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진민주주의의 한 구성요소이다.

선진민주사회의 네번째 구성요소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민주성 확보이다. 생산현장을 하나의 미시적인 사회로 상정하고 그 속에서 평등성을 상대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지도, 관리 및 계획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가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사용자에게 건의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산업현장에서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다. 노사가 합의에 의해 생산현장을 움직여 나갈때 갈등과 노동소외는 사라지고 상호간의 인격과 권익이 존중됨은 물론, 생산력과 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으며, 결국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선진민주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선진민주사회의 마지막 구성요소는 환경적 차원에서 민주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앞에서 언급한 제 측면에서의 민주화 논의는 인간의 생존환경 가운데 인간의 사회적 환경, 즉 인간사회만을 고려한 사회중심적 혹은 인간중심적인 차원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간삶의 또다른 환경인 자연환경과 인간간의 관계에서 민주화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선진민주사회는 인간과 자연환경간에도 상대적 평등성이 확보되는 사회이다. 오늘날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존속이 환경문제의 해결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환경을 그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정 부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동반세계(Mitwelt)"로 인식하고, 자연환경에 생명성을 부여하는 환경조화적인 가치관과 행태를 일상화하는 환경적 차원에서의 평등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정치, 경제 등 사회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가 질적인 수준에서 보장됨은 물론 인간다운 삶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선진민주사회는 인간 삶의 총체적 환경인 사회적 환경과 자연

적 환경 전반의 제 차원에서 상대적 평등성이 구현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선진민주사회를 이룩할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게, 좀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앞선 민주사회로 평가되는 국가들은 지난 수세기에 걸쳐 이상과 같은 민주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즉 정치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사회적 측면 → 산업적 측면 → 환경적 측면의 순으로, 때로는 복합적으로 이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는 각 차원의 민주화를 좀더 심화시켜 보다 성숙된 선진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현재 정치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제 측면에서 민주화를 위한 기반작업을 어느 정도 시작하였다. 현재에는 좀더 심도가 있는 민주화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 평화공존과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선진민주사회는 이상과 같은 민주화의 구현을 우리 사회에만 국한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가간의 관계, 즉 국제무대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산업적, 환경적 측면에서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국가간 평등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약소국도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는 국가간의 경제관계에서 평등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느 일방만이 이익을 얻거나,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도화되어 있다면 이것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오늘날 국제경제관계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의 증대가 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화의 확보는 큰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나 약소국을 불문하고, 또한 인종이나

종교적, 지역적 편견 없이 각국의 국민과 주권성이 존중되는 국제문화 풍토의 조성과 이를 위한 상호협력을 구체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확산 등 국제적 연계 속에 진행되고 있는 생산현장에서도 모기업(母企業)과 자기업(子企業)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간에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차원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인간의 자연환경에 대한 우월성에 근거한 전제적(專制的) 행태에 의해 비롯된 환경문제의 해결을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선진민주사회의 구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국내·외적 차원에서 전개될 때 우리의 선진민주사회는 "열린 사회"가 되어 세계국가,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도정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은 물론,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여건이 조성되어지고 우리가 통일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는 높아질 것이다.

좀더 잘 살아보기 위해, 보다 많은 다수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이 노력해야만 하고, 그러한 사회를 좀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 평화공존 나아가 민족의 통일이라면,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이 이러한 사회건설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선진민주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노력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개척해 나가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선진민주사회를 건설해 갈때 우리 사회가 좀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됨은 물론, 우리 사회가 북한주민들에게 그들이 함께 하고 싶은 사회로 훨씬 다가가게 할 것이다. 선진민주사회에 근접해 갈수록 평화공존에 대한 북한주민의 호응은 커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이 꿈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닥칠 수 있는 현실로 될 것이다. 따

라서 선진민주사회를 건설하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통일의 현실성을 높이는 작업, 바로 우리의 통일정책이다. 다른 한편으로 선진민주사회를 건설하는 작업은 국내·외적 차원에서 정신적·물질적으로 우리의 통일대비역량을 키우는 작업이며, 통일대비역량이 커질수록 즉, 선진민주사회가 구현될수록 그 만큼 통일과정의 진통과 통일의 후유증은 줄어들 것이다.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하는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기본이 바로 선진민주사회의 구현이다. 선진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바로 평화공존과 통일의 현실성을 높이는 대북정책이고 통일정책이다. “선진민주사회의 건설”과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은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민족적 소명에 따르는 “하나의 길”이다.[7]

남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통일이 놓여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좀더 잘 살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과 아울러 이를 지속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보완해주는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북환경공동체의 추진은 선진민주사회의 건설, 평화공존과 통일을 압축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민족적 과제에 실천적으로 부응하는 일이다. 하루라도 빨리 한반도가 인간다운 삶의 터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통일의 과정에서 정치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사회적 측면 → 산업적 측면 → 환경적 측면으로 이어지는 선진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 현실화

7) 손기웅, “베를린선언의 의의와 과제,” 통일연구원, 「베를린선언과 남북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13~20 참조.

를 앞당길 수 있으며, 그 질적 토대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다.

Ⅲ. 남북환경공동체의 기본방향

1. 기본원칙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환경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심화되어야 한다. 환경의 각 분야는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분야만 따로 접근하기에는 모든 환경요소간 상호의존과 상호작용하는 생태적인 특성으로 인해 제한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추진에는 모든 분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에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협력사업은 단계별로 주요한 분야만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분야선정은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에 기초가 되는 분야 및 실현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이미 추진되고 있는 분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에 기초가 되는 분야는 다른 환경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 분야의 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민간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환경협력분야의 선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8)]

첫째,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병행 추진이다. 환경적 요구와 경제적

8) 손기웅,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방안: 양자적·다자적 차원」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남북환경협력의 의의와 추진 기본방향,” 환경운동연합,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문집」(2000) 참조.

요구가 맞물려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이 양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환경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단·중·장기적으로 중요한 환경적 효과를 수반하고 동시에 환경지식 및 관리능력의 파급효과, 환경기술의 확산효과를 통해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한다.

둘째, 수요자중심의 환경협력이다. 북한의 환경실태와 환경능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북한이 우선적인 지원 및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중에서 우리와 상호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가능한 자료·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발표된 환경관련 논문 및 글들을 분야별·빈도별로 정리해 보면 북한의 관심분야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9] 북한의 관심사항이라 판단된 분야중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에게 가능하고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류·협력에서 설령 우리보다 북한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교류·협력은 상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북한 산림조성 분야로서 산림조성을 통해 북한의 홍수방지, 공업·발전용수 확보, 관개수 확보 등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재를 장기적으로 확보한다. 또 하나의 예로서 북한의 대기오염저감 분야이다. 대기오염 저감,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대체에너지 기술을 지원하여 북한의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는 대기오염 감소분만큼의 대기오염(이산화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즉각적으로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경제성을 보일 수 있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 – 자원재활용, 두만강 수질개선, 폐기물처

9) 북한의 논문집 「기상과 수문」(농업출판사), 「국토」(중앙과학기술통보사), 「기술혁신」(중앙과학기술통보사), 「전력」(중앙과학기술통보사) 등을 참조.

리 등 - 을 선호할 것을 감안하여 이 부분에서의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단계적 환경협력이다. 남북환경협력에 대한 상호 인식과 관심의 수준을 고려하고, 남북관계의 전반적 진전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남북환경협력을 접근한다.

넷째, 다각적 환경협력이다. 동북아지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내국가들의 노력을 활용하고, NGOs와 국제기구·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이들과의 협의 속에서 남북환경협력의 큰 흐름과 방향, 개별 사업내용과 방식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한다.

특히 환경관련 NGOs는 관계국간의 중요한 정보의 중계역할을 하고,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환경이익을 대변하는데 있어서 정부들보다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남북환경협력은 물론 지역 및 지구적 차원의 환경협력에 관련 NGOs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정부는 국가간 정치·경제적 조건과 협력방향에 대한 이해관계, 주권의 옹호 등으로 협력상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황해오염과 관련하여 한국의 NGOs가 정부가 하기 어려운 요구를 중국의 황해연안오염에 관심을 가진 중국의 NGOs에 협조를 요청하고 중국정부에 압력을 가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NGOs가 중국의 환경 NGOs에 자료·정보의 공개를 촉구하고, 상호 방문과 세미나 등을 통해 경각심을 일으키며,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업, 중앙정부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NGOs를 중국내 일반 시민들에게 환경문제를 계몽하고 시민운동을 조직·활성화하는 중요한 채널로 활용한다. 물론 중국내 환경 NGOs의 성장에는 제한이 있겠지만 시장경제가 활성화될수록 환경 NGOs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관련 NGOs의 활용을 위해 정부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고 자료·정보의 제공과 상호 협의,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환경친화적 남북경협이다. 남북경협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적극 고려한다. 환경문제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개발위주의 경협이 추진될 경우, 한반도의 환경악화 및 남북경협의 정체는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해질 것임을 유념한다.

여섯째,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이다. 산성비, 황사현상, 황해오염 등 남북한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월경성 환경문제에서 남북한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양자·다자간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일곱째,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적극 활용이다. 국내정치적 문제, 경제 및 기술적 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남북환경협력에 소극적인 북한의 현실을 감안,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없으면서도 필요한 자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남북협력을 교류·협력 활성화의 준비단계에서 적극 활용한다.

2. 추진구도

남북환경공동체의 궁극적 형태는 남북한이 동일한 환경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환경정책 및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이한 체제와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남북환경공동체를 추진하면서 통합의 결속도를 높이는 데에는 경제공동체 형성의 두가지 사례를 원용해 볼 수 있다. 하나는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제도화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통합체(제도적 경제공동체: Institutional Economic Community)이며, 다른 하나는 중·대만과 같이 교류·협력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단위(기능적 경제공동체: Functional Economic Community)이다.

제도적 경제공동체의 전형적인 사례인 EU는 베네룩스 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에서 출발하여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을 거쳐 화폐동맹과 정치동맹의 순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EU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화폐통합을 이루었으며, 경제공동체 형성이 국가간 정치·경제적 제도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기능적 경제공동체의 대표적 사례로는 중·대만관계를 들 수 있다. 공식적인 조약의 체결 이전에 경제·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이다. 양안간 경제교류 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수년간 대만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5%, 중국의 대대만 수입의존도는 11~12% 수준에 이르고 있다.[10]

아직도 이념적,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적대성이 존재하고 상호 이질적인 경제체제 및 질서를 운영하고 상호 독립적인 환경정책과 법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남북한의 현실에서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을 EU의 사례를 적용시켜 조망하는 것은 실천적이지 못하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제도적인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은 무망하다.

따라서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에는 중·대만사례가 보여주듯이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분야에서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기능적인 통합을 우선하고, 관계의 심화과정에서 EU

10) 한국개발연구원,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종합계획(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9), pp. 14~15 참조.

의 제도적인 공동체 형성을 이끌어내는, 두 사례를 종합적으로 원용하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즉 우선 남북한간에 환경분야 교류·협력을 도입·추진하여 공동체 형성의 정도를 중·대만 교류·협력의 초기 단계 수준으로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환경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조치 및 기구 설치, 환경정책 및 제도의 긴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단기적인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단일한 환경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 EU와 같은 제도적인 남북환경공동체를 모색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정책과제이다.

이러한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과정을 상호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수준에 따라, 환경분야 남북 교류·협력 심화의 정도에 따라, 남북한 정치적 환경의 개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표 1> 참조).

첫째, 제1단계로서 "남북환경공동체의 준비"단계이다. 남북한간의 서로 상이한 체제와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 환경분야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공동사업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단계이다.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물꼬를 트게 되는 이 단계에서는 민간차원은 직접 교류·협력을, 당국차원은 제3국 혹은 국제기구 주관의 사업에 참가하는 간접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남북한의 정부는 교류·협력을 위한 원칙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되 실행상의 제반 문제를 NGOs에게 이관하고 정부는 이를 조정·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함으로써 NGOs가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제3국 혹은 국제기구 주관의 사업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는 교류·협력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소규모 교류·협력부터 추진한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인 정부간 동북아환경협력에 참가하여 지역 환경현안의 해결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취한다.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공동노력으로서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UNDP, UNEP, UNESCO

등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지구환경문제 개선에 남북 환경협력을 모색한다.

<표 1> 남북환경공동체 추진구도

제1단계: 남북환경공동체 준비기
· 「한반도지속가능발전남측위원회」 및 「한반도지속가능발전북측위원회」 발족 · 다양한 남북환경협력분야 발굴 및 준비 · 민간의 직접적 남북협력, 정부 지원 · 정부의 간접적 남북협력, 민간 활용 · 남북간 자료·정보교환
⬇
제2단계: 남북환경공동체 심화기
·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족 ·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직접적 남북환경 협력 본격 추진 · 「남북환경장관회의」 추진 · 「남북환경협정」 체결
⬇
제3단계: 남북환경공동체 완성기
· 남북한 환경정책·제도의 통합 · 「남북한통합환경보전계획」 수립 · 「남북한통합국토건설계획」 수립

한편 남북한은 내부적으로 남북한 양자적 환경교류·협력과 남북한 환경통합을 대비하는 사전준비작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지원·자문하기 위한 “반민·반관” 형태의 「한반도지

속가능발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남북은 각각 「한반도지속가능발전남측위원회」(가칭) 및 「한반도지속가능발전북측위원회」(가칭)를 발족한다.

그리고 이들 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기준, 측정네트워크 운영방법, 환경오염실태 등에 관한 정보·자료 및 기술교환, 환경전문가간 학술교류, 단절된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는 산림녹화와 한반도 서식 고유종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관한 정보교환 등의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남북환경오염·측정기준·방법통일, 남북 환경법령의 비교 및 관련제도의 조화 방안, 한반도의 자연생태계 공동조사,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11],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 관류하천의 수자원관리, 환경네트워크형성, 자원순환적·환경친화적 남북경협 등 향후 남북환경협력사업을 준비한다.

둘째, 제2단계로서 "남북환경공동체의 심화"단계이다. 남북한간에 환경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공동협력사업이 본격화되고,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환경협력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이다. 남북한이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민간 및 당국차원에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즉 제1단계에서 「지속남위」와 「지속북위」를 중심으로 준비하였던 제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남북한 정부는 남북환경협력과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먼저 「남북환경장관회의」(가칭)를 추진하여 인위적으로 분단된 한반도 환경을 하나로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정신을 천명하는 「한반도환경공동체선언」(가칭)을 채택한다.

---

11) 이 글에서 비무장지대를 대상으로 한 남북환경공동체 형성 방안은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에 관하여는 손기웅,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참조.

나아가 남북환경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남북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가칭, 이하 「남북환경협정」)을 체결하며, 이러한 과정을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유기적 협력관계 아래에서 진행한다.

한편 「남북환경협정」을 바탕으로 남북한은 한반도내 환경문제 개선에 상호 협력하고 공동대응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주변 환경문제 -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이동문제, 동·황해 방사성폐기물 투기문제 등 - 에 대한 공동대응,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환경라운드 등 국제적·지구적 환경논의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제3단계로서 "남북환경공동체의 완성"단계이다. 일체의 남북한간 환경개선 노력을 통합하는 환경통합을 추진한다. 남북한의 환경정책 및 제도를 통합하여 「남북한통합환경보전계획」(가칭)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단일한 환경법·규정아래 동일한 환경정책과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국토의 공간적 이용에 환경성을 강조한 「남북한통합국토건설계획」(가칭)을 수립·시행한다.[12] 이와 병행하여 공동으로 지역환경보전계획의 작성, 수계별·권역별 보전대책의 수립, 남북한 생활오염방지 개선사업 등을 모색한다. 이 단계는 단순히 양자적·다자적 차원에서 직·간접적인 환경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전반적인 평화공존의 심화과정에서 남북연합이 이루어질 경우 상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어서는 안될 사항은 남북환경공동체를 추진하는 초기 단계부터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국토이용 및 환경보전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

12) 변병설,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법제 정비방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친환경적 국토관리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집」(2000); "통일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 전략"(통일연구원 초청간담회 발제논문, 2001) 참조.

이용은 시작이 잘못되면 시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시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이 잘못될 경우 그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고통을 겪을 것이며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엄청난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국토환경보존구상안과 국토개발구상안을 마련하여 한반도 환경보호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남북한 지역의 균형 개발 및 보호보다는 북한지역 내에서의 균형개발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남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균형개발 및 보호로 전환해 나간다.

3. 재정조달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 그것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남북 환경협력 추진구도가 논의되었다면 이제 문제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남북환경공동체 건설의 추진은 민족의 미래를 남북한이 함께 설계하고 발전시키자는 공존·공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환경공동체의 건설은 남북한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도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의 수혜자임을 고려할 때 북한 역시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 필요물자 및 기자재에 대한 기여가 바람직하나 현재의 북한현실을 감안할 때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이 남북환경협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환경공동체의 추진 작업은 우선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남북환경협력을 남북환경공동체라는 제도화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민간차원에서의 남북환경협력의 확

대만으로도 실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환경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환경적 실리가 보장된다고 한다면 남북환경공동체의 제의를 수용할 수 있다. 남한측이 환경공동체의 초기 단계에서 상호주의를 강조하지 않고 환경협력을 북한이 긴급하게 필요하는 농업 및 에너지개발, 기타 지원 제공 등과 연계한다면 북한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환경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소요될 재원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며, 다음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남북환경기금」(가칭)을 조성한다. 남북 환경교류·협력은 한반도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통일 이후 환경통합을 대비하는 통일대비사업임을 감안할 때 소요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환경분야 교류·협력의 주체가 민간이고 환경보호·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혜자가 민간임을 감안할 때 민간차원, 즉 기업은 물론 일반주민들의 재정분담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반도 환경보호·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내적 준비, 남북 환경교류·협력사업 추진, 통일 이후 환경통합 대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남북환경기금의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환경관련 특별회계 혹은 환경기금의 설치,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공채와 같은 국공채의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남북환경기금을 조성하도록 한다.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거나 자연환경회복을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집중되는 것임에 반해, 이로 인한 편익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소요와 재정조달간의 시간적 불일치와 비용의 세대간 분담을 위하여 환경공채의 발행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7월 동독과 서독의 니더작센주는 국경을 통과하여 영향을 미치는 하천 및 대기정화

계획 수행, 동독의 화학단지인 비터펠트에 수은 제거시설 설치, 하일리겐슈타트와 슈텐달의 다단계 정화시설 건립을 위해 환경공채발행에 합의하였다.

민간의 경우 경제단체나 기업뿐만 아니라 한반도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민들도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주민들의 성금 모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남북환경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의의, 그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반도지속가능발전남측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남북경협에 따른 오염예상산업에 대해 환경개선세와 같은 조세를 신설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 진출하는 오염배출기업에 대해 오염부담금과 같은 환경세를 부과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선진국으로부터 환경차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환경문제에 대처하려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회의를 계기로 「환경관련 저리 엔차관 계획」을 시행중이다. 따라서 한반도 환경관련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 동 차관의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기구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구환경금융(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개도국의 지구환경 관련 비수익성 투자사업 및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무상원조 등 환경문제만을 전담하는 유일한 재정기구로서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다. 동아시아 해양환경보호 및 관리사업, 두만강 환경보호 전략계획 및 국경간 진단사업은 이미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 생태계보존과 관련한 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의 재원조달도 동 기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외 World Bank, IBRD, ADB, 혹은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재원조달 방법이 선택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남북환경기금을 통한 방법과 지구환경금융(GEF)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방법이 가장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한반도 내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은 환경기금형태로 조달하고,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활용한다.

13) 곽승준, “남북한 환경협력 및 재원조달방안”, 국회환경경제연구회·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북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남북 환경·에너지 경협방안」(2000), pp. 20~22 참조.

Ⅳ. 남북환경공동체의 제도적 틀

1.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은 단계적으로, 단·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성이 있는 우선사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에 대한 남북한 공감대 수준,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추진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환경공동체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틀 내에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세부적으로 협의할 공동틀인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상호 합의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아직 남북 환경교류·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체계적인 환경교류·협력을 준비하며,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환경교류·협력을 추진·지원하기 위한 「한반도지속가능발전남측위원회」(이하 「지속남위」)를 국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남위」의 구성·운영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북한에 실질적인 민간단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민간의 협력을 쌍방의 당국이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반민·반관"의 형태를 취하도록 한다. 즉 「지속남위」는 민간이 자율적 논의와 조정의 절차를 통해 대북 환경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정부의 통일 전·후 환경정책 및 제반 대북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속남위」가 특정 단체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것을 지양하여 남북 환경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대화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남위」의 출범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요청하여 명실공히 남북한이 참여하는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즉 「지속남위」의 구성 후 북측에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협력을 제의한다. 북측에 남측의 「지속남위」에 상응하는 「한반도지속가능발전북측위원회」(이하 「지속북위」)의 설치를 촉구하고 양 위원회간의 합의를 통해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의하는 것이다.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안은 <표 2>, <표 3>과 같으며 「지속남위」는 물론 「지속북위」의 조직도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준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소는 남한의 「지속남위」와 북한의 「지속북위」 양쪽에 동시에 설치하되 남북을 번갈아 가며 환경교류·협력과 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반 협의가 진행되도록 한다.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발족후에는 이를 중심으로 혹은 별개로 민간차원, 정부차원, 반민·반관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 환경교류·협력을 추진하되, 이러한 환경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자문·홍보하며, 활성화하기 위한 대화의 무대로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활용한다. 또한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분단된 한반도 환경을 하나로 회복하고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정신을 천명하는 「한반도환경공동체선언」과 「남북환경협정」의 채택을 논의한다.

한편 쌍방의 정부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남북환경장관회의」를 통한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성사와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를 지원한다.

<표 2>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안)

1. 필요성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의의 확산
-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활성화
-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2. 구성

○남북의 민간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구성
- 반민·반관 형식
- 민간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남북 환경교류·협력을 쌍방의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민·관간 협의통로 확보
- 관심있는 국제기구·국제 NGOs의 참여

3. 기능

○민간 사회단체간 협의·정보교류
○민간 사회단체-정부부처·산하기관간 협의
○남북 환경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국제적 연대활동 추진

4. 조직

○총회, 이사회, 임원, 분과위원회, 환경자료정보센터, 사무국으로 구성
- 총회: 남북 환경교류·협력 관련 민간 사회단체를 회원으로 구성
  - 관심있는 정부부처·산하기관도 참여
  - 관심있는 국제기구, 국제 NGOs도 참여
- 이사회: 다수의 사회지도자급 인사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임원: 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환경자료정보센터장, 사무국장으로 구성(각각 남북한 동수의 공동체제로 구성)
- 분과위원회: 총회 산하에 기능별로 교류·협력, 연구·자문, 후원·홍보 등 3개 분과 설치

<교류·협력분과위원회>

① 국내차원: 민·관 협조체제 구축
- 협의통로 확보 및 제도화
-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외 한반도 환경보호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협조체제 구축

② 남북차원: 연구·자문분과위원회 제안 사업 추진
  · 남북 민간차원 협력사업 제의
  · 남북 당국차원 협력사업 제의
③ 국제차원: 한반도 환경보호 관련 국제적 지원 획득
  · 관련 자료·정보 획득
  · 국제협조체제 구축

<연구·자문분과위원회>

① 남북 환경현황 분석
  · 남북 환경보호 관련 자료·정보 분석
  · 국내외 연구성과 교환
    • 전문가 초청세미나
    • 정부당국자 자문
    • 국제기구·단체 공동세미나
② 남북 환경교류·협력사업의 연구·자문
  · 사업분야 및 범위, 추진 방법 확정

<후원·홍보분과위원회>

①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② 소요재원 확보: 민간모금, 정부보조금, 국제지원금
  - 환경자료정보센터: 남북한, 동북아, 지구적 차원의 환경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 배포
  - 사무국: 총회·이사회·분과위원회 결정사항 실행 및 환경자료정보센터 지원

5.『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출범시의 조치 사항

○남북 환경교류·협력 관련 토론회 개최
  -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필요성, 시의성 강조
  -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직 분위기 조성
  -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관심있는 정부부처·산하기관도 참여
    • 관심있는 국제기구·국제NGOs도 참여
○남북협력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기구 및 단체 등을 통한 보조금 확보 모색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명의로 남북한 당국에 남북 환경교류·협력과 남북환경공동체 형성 촉구

<표 3>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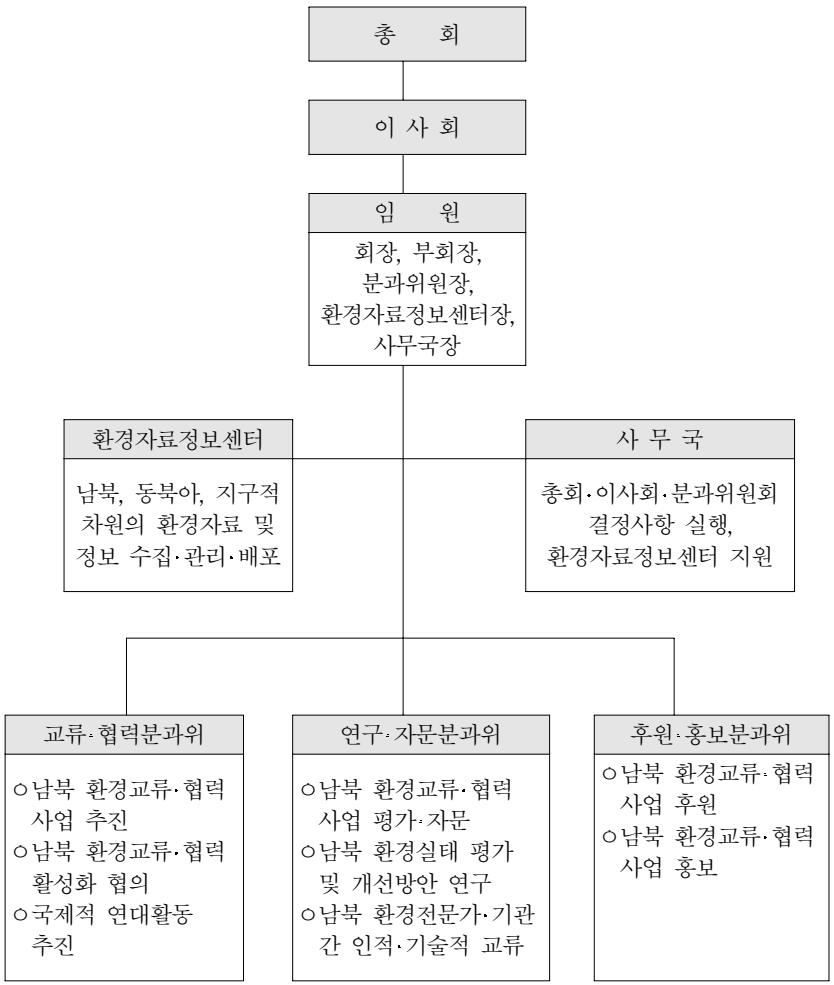

2. 남북의회환경포럼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이를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입법부인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의 관련 위원회 및 의원간에 공동협력의 틀인 「남북의회환경포럼」(가칭)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의회환경포럼」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인간과 자연간의 연대를 회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공동체를 건설하는데 남북의회가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아직 남북 환경교류·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국회내에 우선 국내적으로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준비하며, 국제적 차원에서도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국회남북환경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남북환경포럼」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제도화·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첫째, 남북 환경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성을 제고한다. 둘째,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비를 추진한다. 셋째, 「남북환경협정」을 준비한다. 넷째, 민간에서 추진하는 남북 환경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다섯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북 환경교류·협력 관련 정책을 협의한다. 여섯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남북의회환경포럼」의 구성을 추진한다. 일곱째, 국제적 차원에서 남북 환경교류·협력을 지원한다.

「국회남북환경포럼」의 구성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되, 환경문제가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희망 의원들도 함께 참여시킨다. 또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국회 전문위원과 각 당의 전문위원, 그리고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국회남북환경포럼」의 구성후에는 북측에 「남북의회환경포럼」의 설립을 위한 협력을 제의한다. 따라서 「국회남북환경포럼」은 그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한편으로 「남북의회환경포럼」의 남측준비위원회 성격을 가진다.

「국회남북환경포럼」이 출범후 수행해야 할 주요 우선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남북 환경교류·협력 활성화의 전반적 기틀이 될 「남북환경협정」의 채택을 준비한다. 이때 「지속남위」와 긴밀히 협의하며,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정부·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둘째, 「지속남위」의 사업을 지원한다.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국내적으로 구성된 「지속남위」는 출범후 남북 환경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물론, 「한반도환경공동체선언」과 환경공동체 추진을 위한 대화의 무대로 활용될 계획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회남북환경포럼」의 출범 전·후에 「지속남위」의 출범을 지원하여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연대감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민간의 남북 환경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며, 남북 환경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민간과 체계적인 협의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남북당국에 환경협의의 정례화를 촉구한다. 그동안 남북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자적 차원에서의 당국간 남북 환경교류·협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에서 환경분야가 남북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명시되고, 정상회담 기간중 김정일 위원장이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였으며, 남북간에 경제협력실무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현재, 환경분야 남북 교류·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정부가 우리의 환경부와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간에 「남북환경장관회의」를 개최·정례화하여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남북환경장관회의」의 개최·정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이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회의에 환경관련 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남북환경기금」의 설치를 지원한다. 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초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적부문의 재원조달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발적 해결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적부문에 투자될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국가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형식의 「남북환경기금」의 설치를 준비한다.

3. 남북환경협정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을 제도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통합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환경교류·협력의 기본틀이 될 「남북환경협정」이 채택되어야 한다. 「남북환경협정」의 검토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원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한반도 차원의 남북 양자간 환경분야 교류·협력은 물론 지역적,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양자간 환경교류·협력도 명시한다. 둘째, 정부, 민간 사회단체, 개인 등 환경교류·협력의 주체를 다양화한다. 셋째, 환경문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환경교류·협력도 포함한다. 넷째, 환경교류·협력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조직체의 구성과 시행약정의 체결을 명시한다.

한편 환경교류·협력의 세부적 분야로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손상 방지대책, 공해 - 폐기물·폐수·대기오염 등 - 배출 방지 및 정화대책, 환경영향평가제, 대기중의 오염감소·측정 관련 조치, 산림조성·파괴감소를 위한 조치, 폐기물 감소·파악·처리 등 공해방지 제부문에 관한 상호 정보·의견·경험 교환, 환경손상·공해배출 등에 관한 공동조사 및 관리감독 등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남북환경협정」(안)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남북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안)

남과 북은 범세계적인 환경훼손이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그러한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적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한반도 차원은 물론,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에서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분야에서 쌍방의 협력이 환경문제의 도전에 대처함에 있어 상호 유익하며 한반도, 지역 및 범세계적 환경보호와 개선에 필수적임을 믿고, 환경피해의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쌍방의 협력 활동에 있어서 예방조치가 중요한 요소로서 활용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에서 쌍방간 협력의 강화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과 북은 평등과 상호호혜의 기초 위에서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시킨다.

제 2 조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

1.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통계·정보·기술 및 자료의 교환
2. 환경전문가, 기술요원, 공무원 및 협력당사자의 교환
3. 일반 또는 특정 환경문제에 관한 공동세미나, 심포지엄 및 회의의 공동 개최

4. 환경영향 공동평가를 포함하는 상호 관심주제에 관한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의 실시
5.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협력 형태

제 3 조

협력은 상호 합의에 따라 환경보호와 개선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행하여진다.

1.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저감·통제 및 자원 보전·관리
   - 이동 및 고정원으로부터의 배출 통제를 포함하는 대기오염 통제
   - 도시 및 산업용 폐수처리를 포함하는 수질오염 통제
   - 연안 및 해양오염 통제
   - 농업배수 및 농약 통제를 포함하는 토양오염 통제
   - 고형폐기물 관리 및 자원 회수
   -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 통제
   - 유해 화학물질의 통제와 처리
   - 소음 저감
   - 산림황폐 방지와 산림 조성
   -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 환경 및 자연자원의 관리
2. 한반도, 지역 및 범세계적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대한 기여
3. 기타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관한 분야

제 4 조

1. 남과 북은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남북환경협력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위원회는 쌍방의 적절한 곳에서 매년 1회씩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이 협정 이행과 관련한 사항의 협의
   나. 이 협정 이행의 진전상황 검토
   다. 이 협정에 의한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는 구체적 조치를 쌍방에게 권고
4.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쌍방의 접촉은 남북연락사무소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제 5 조

1. 남과 북은 양자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정 협력계획 및 사업의 조건·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시행약정을 정부기관·연구소·대학·민간단체 및 기업들간에 체결한다.

2.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 그러한 약정에서 규정한다.

제 6 조

1. 남과 북은 이 협정에 의한 참여기관간 협력계획 및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형평성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부담한다.
2. 남과 북은 쌍방의 주민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7 조

1. 이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환경보호와 관련한 조약, 협약 또는 지역적·국제적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남과 북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5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의 체결을 포함하는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쌍방의 해당 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제 8 조

1.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소유권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 정보는 남과 북의 어느 일방에 의해 관례적인 경로를 통해, 그리고 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
2.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특허권, 의장권과 기타 공업소유권의 처리는 제5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규정된다.

제 9 조

1. 이 협정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될 수 있다.
2. 이 협정은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발효되며 5년간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남과 북의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종료 6월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는 제5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 혹은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Ⅴ. 남북환경공동체를 위한 통일화사업

1.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

반세기 분단기간 동안 남북한의 언어는 매우 큰 이질화과정을 겪어 이제는 같은 동족으로서 같은 말을 쓰면서도 서로 이해가 안되거나 느끼는 감이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전문분야에서는 그러한 이질성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다. 경제분야,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한 접촉에서 의사전달에 혼란이 초래될 경우 남북 교류·협력 자체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실제로 남북교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어해석의 차이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남북 과학기술용어의 통일작업이 향후 남북간 과학기술분야,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분야 교류·협력의 고도화를 이끄는 바탕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용어상 이질화의 해소, 통일된 용어의 사용이야말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과 과학기술교류·협력 활성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분야에서도 남북한은 용어상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식물의 이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기본개념, 학술적 용어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14]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의 편찬은 남북한 환경교류·협력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교류·협력의 내용과 질을 고도화시키면서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의 언어통합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14) 예를 들어 남북한의 조류학 용어나 식물학 용어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 서로간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표 5>, <표 6> 참조).

가진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이 단순히 남북환경협력의 활성화란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이질성 극복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을 남과 북이 함께 공인하며 편찬하되, 가능하다면 해외의 동포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남북 및 해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통일용어사전이 되도록 한다.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의 기본편찬방침으로 남과 북의 용어간 "융합용어"를 추구하되, 해외에서의 사용현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둘째, 맞춤법, 자모배열, 발음, 올림말, 뜻풀이 등에서 남북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한쪽의 포기를 강요

<표5> 남북한 조류학 용어 비교

남 한	북 한
아 비	붉은목다마지
슴 새	꽉 새
황 로	누른물까마귀
황 오 리	진 경 이
물 수 리	중 경 새
독 수 리	번대수리
쇠뜸부기	물병아리
흰물떼새	흰가슴알도요
제비갈매기	검은머리쇠갈매기
소 쩍 새	접 동 새

<표6> 남북한 식물학 용어 비교

남 한	북 한
침 엽 수	바늘잎나무
상 록 수	사철푸른나무
낙 엽 수	잎이지는나무
활 엽 수	넓은잎나무
자웅이주(雌雄異株)	암수딴그루
수 관(樹冠)	나 무 갓
우상복엽(羽狀複葉)	깃모양의 겹잎
풍 매 화(風媒花)	바람나름꽃
화 관(花冠)	꽃 갓
수상화서(穗狀花序)	이삭꽃차례

하는 것보다도 복수의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한다. 남북주민이 느끼게 될 용어사용의 이질감을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관점에서 해소해 나간다는 자세를 견지한다.

셋째, 단순히 현재의 시점에서 통용되는 용어사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체계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용어통일사전을 편찬하여 통일 이전에 남북 및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넷째, 용어통일사전의 편찬을 1회적이거나 한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정·증보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물질적 토대를 구축한다.

현재 북한에서는 사전편찬을 정부기관에서 주관한다. 그 결과 사전편찬의 성과가 그대로 다음의 사전을 만들 때에 온전히 계승되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의 기관이 계속적으로 편찬사업을 이어가므로 사전편찬의 다양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하나의 정부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전을 편찬함으로써 규범성, 즉 용어를 정부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인도하려는 의도, 언어를 사회발전의 무기로 파악하여 사회의 이념에 충실히 하려는 의도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주체적인 언어이론을 형성해 나가면서 사전에 교조적이며 이념적인 성격을 강하게 도입하였다. 사전의 올림말, 풀이말, 용례 등 어디에서나 이러한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남한에서는 대부분 민간에서 사전을 편찬하고 발간한다. 여러 출판사가 상업적인 경쟁체제 속에서 사전편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 발전성과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남한에서도 규범성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으나 실용적 욕구에 적극 대응하려는 상업적인 이해가 강조됨으로써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한편 북한의 환경분야 용어에 대한 남한의 연구는 주로 북한용어의 내용이나 남북언어간 이질화 현상을 살피는데 중점을 두었다. 남북 환경용어의 통일에 대한 깊은 연구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북한의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용어연구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내용적 측면에서 순수한 언어사전으로서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을 편찬해야 할 시기가 남북 양쪽에서 성숙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남북의 환경용어 간에는 어휘나 내용 외에도 표기법, 자모배열, 부호사용 등 여러면에서 차이가 있다. 남한의 사전은 「한글맞춤법」(1988)과 「표준어규정」(1988)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은 「조선말규범집」(1988)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남북의 사전은 정보제공의 순서나 정보의 비중치에도 차이가 있다. 남한의 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올림말-한자/원어 표기-발음-이형태 정보-품사-불규칙형태 정보-어원/형태소 분석-전문분야 표시-풀이말-용례-참고어-파생어-속담-관용어"의 순서이나, 북한의 사전에서는 "올림말-발음-불규칙형태 정보-품사-전문분야표시-풀이말-용례-참고어-한자/원어표기-파생어/합성어-관용어/속담"의 순서이다.

한자와 원어의 표기(표기의 유무 및 위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는 한자와 원어의 표기가 당연한 것으로서 이는 한자도 우리의 언어를 표현하는 서사체계로 간주되는데 따른 것이다. 북한에서는 한글전용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한자표기는 원어의 참고자료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을 편찬할 경우에 이들 차이점에 관한 합의가 선결과제이다.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의 편찬을 위한 남북협력사업은 정부당국간 합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민·관합동에 의해 추진하는 방안, 민간차원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 등 세가지를 고

려할 수 있다.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의 편찬이 환경적, 과학기술적, 경제적 효과를 수반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남북의 민간이 협의·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의 편찬이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구체적으로는 환경분야 교류·협력의 기초,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되는 표준화사업임을 감안하고, 환경분야 통일사전의 편찬이 여타 분야 용어의 표준화 및 통일사전 편찬에 파급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당국이 이를 지원하는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동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환경협력을 촉진하고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을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구성될 반민·반관 형태의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의 편찬을 위한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편찬공동위원회」(가칭, 이하 편찬공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남한에서는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편찬남측위원회」(가칭, 이하 편찬남위)를, 북한에서는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편찬북측위원회」(가칭, 이하 편찬북위)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

남북당국간 회담을 통해 혹은 남북 민간간 협의를 통해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의 편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통일사전 편찬을 위한 실무작업은 상기한 반민·반관의 「편찬공위」가 구성되어 추진하도록 한다. <표 7>은 통일사전 편찬사업의 전반적 추진구도를 보여준다.

남한과 북한은 각자의 지역에 통일용어사전 편찬의 실무를 담당할 반민·반관 형태의 「편찬남위」와 「편찬북위」를 각각 구성한다. 남북이 함께 조직하여 통일용어사전 편찬사업 전반을 관장할 기구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편찬공위」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사업전반을 지원하는 사무국, 통일사전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점을 도출하는 연구·자문분과위원회, 사전의 편찬을 담당하는 출판분과위원회, 사업의 재정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후원·홍보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표 8>은 공동위원회의 조직을 보여준다.

<표 7>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 편찬사업 추진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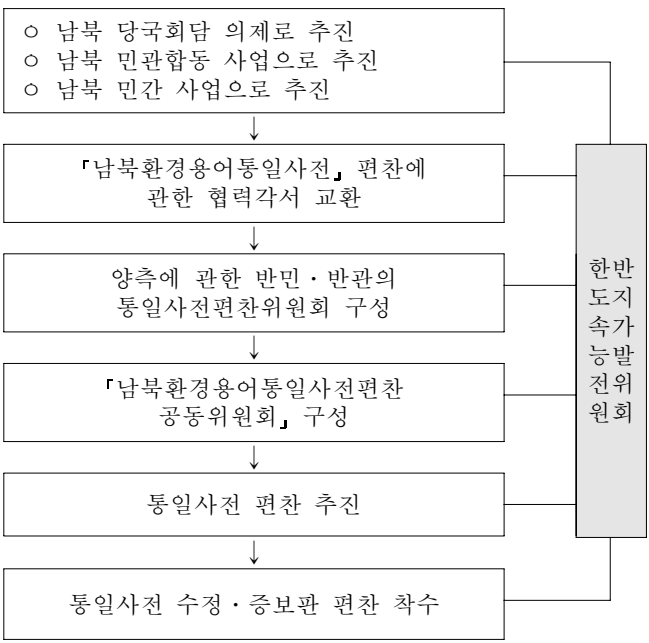

<표 8>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편찬공동위원회 조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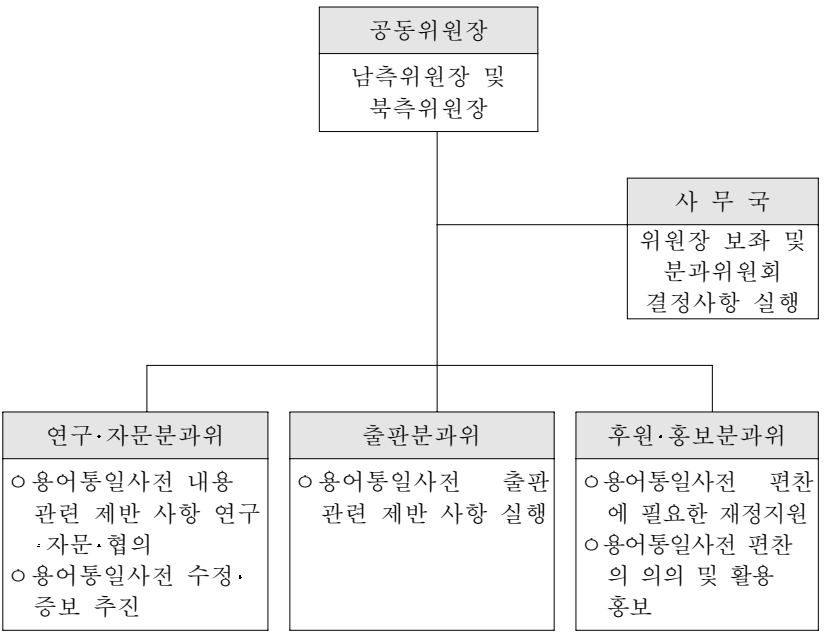

한편 남한에 설치될 「편찬남위」의 조직과 북한에 설치될 「편찬북위」의 조직도 여기에 준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편찬공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될 사전편찬은 쌍방의 용어를 파악하고 이해한 바탕위에 이질성을 점차 해소하여 통일된 용어를 도출하는 단계적인 추진구도에 입각한다.

첫째, 제1단계로서 공감대 형성이다. 「편찬공위」를 중심으로 통일사전편찬에 관한 개괄적인 실천방향에 관해 합의한다. 남과 북 및 해외에서 사용되는 환경용어의 코퍼스를 구축한다.

둘째, 제2단계로서 협상이다. 통일사전 편찬에 관계되는 구체적 사

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표기법(맞춤법, 자모배열,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 통일에 관하여 협의(부분적 통일)한다. 여기에는 올림말 선정에 관한 협의와 뜻풀이 내용에 관한 협의가 포함된다. 더불어 통일사전 편찬 관련 세부적 추진방향과 그외 관련 교류·협력의 범위를 설정한다.

셋째, 제3단계로서 편찬 및 증보판 작업의 착수이다. 통일사전 편찬의 실무작업을 추진하여 편찬한다. 이어서 표기법(맞춤법, 자모배열,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 통일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며,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의 수정·증보판 작업을 착수한다.

한편 분야별 세부적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기문자로서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의 편찬에서는 한글전용을 지향한다. 남북 환경용어의 통일과 남북 언어공동체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일사전의 편찬에서 표기문자로 한글이 마땅하다. 다만 한글로 쓴 낱말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목적으로 남북간에 한자나 로마자를 괄호안에 넣는 형식을 협의한다.

둘째, 고려해야할 요인도 많고 체계도 단순하지 않은 맞춤법에 관하여 남북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반적인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통일용어사전에서 사용할 방식만이라도 합의를 추구한다. 환경용어사전은 언어학적인 성취를 달성하려는 학문적 사전이 아니라, 현재 남북 및 해외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접해야 하는 실용사전이므로 무엇보다 대중성, 실용성, 편이성을 남북간 맞춤법이나 발음에 관한 합의시 중요한 기준으로 정한다.

올림말에서 맞춤법이 일치하지 않으면 번거롭고 비경제적이지만 양쪽의 표기법에 따라 두가지 형태를 다 올림말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한다. 그러나 긴 문장형태인 뜻풀이(설명어)의 경우에는 표기법이

다르고 띄어쓰기가 같지 않다고 두 번씩 쓸 수 없으며, 그렇다고 어느 한쪽의 맞춤법에 따라 말을 쓰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뜻풀이 맞춤법에 관한 남북간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통일사전을 남북이 각각 따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한다. 공동의 올림말을 올리되 뜻풀이 설명을 남북 각자의 맞춤법으로 쓰는 방안으로, 이러할 경우 통일사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정도만이라도 먼저 만들어 사용하도록 해서 서로간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자모배열은 그 순서가 다르면 올림말이 놓일 위치가 달라지므로 독자는 찾고자 하는 올림말이 놓인 위치를 예상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남북은 특히 쌍자음과 합성모음자의 배열순서가 다르다. 자모배열에 대한 합일점을 찾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여 협의하되, 만약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전편찬의 원칙으로 협의한다.

① 하나의 올림말을 남북 각자의 자모배열순서에 따라 두 군데에다 동시에 올린다. 이 경우 먼저 배열된 한 군데에서만 뜻풀이를 하고 다른 곳을 위해서 “가라”는 표시를 해줄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기도 어렵고 또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양쪽에서 모두 정식으로 뜻풀이를 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② 남한에서는 남한식 자모배열순서에 따라 사전을 편찬하고 북한에서는 북한식 방식에 의한 사전을 편찬하는, 두 가지 사전의 동시편찬을 고려한다. 이 경우 남한에서는 남한식 위주의 사전을 만들고 북한방식에 의한 것은 올림말만 넣고 “가라”는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권말에 색인으로 처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빠른 동질화를 위해 권말에 색인이 들어가더라도 본문에서 양쪽의 방식을 다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올림말로서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은 순수한 어휘사전을 지향한다. 올림말은 남북 양쪽의 현재 환경용어사전에 있거나 그외 남북 및 해외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대상으로 "융합용어"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질적인 용어를 다 받아들이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상호 협의하여 일부의 올림말은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낱말을 올림말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의 경우 합성어의 성격과도 거리가 먼 구절에 해당할 만한 용어를 올림말로 넣은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남한의 올림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낱말을 올림말로 삼고, 구절 가운데 일부는 부올림말로 옮기지만 대부분은 용례로 해결하는 방식을 협의한다.

동형이의어가 여럿일 경우에는 올림말의 배열은 빈도순에 따르도록 하며, 남과 북 혹은 해외 어느 한 곳에서만 쓰이는 올림말의 형태나 뜻이 있을 경우에는 참고어 난에 다른 쪽의 해당 대응어를 밝혀준다. 그러나 그 올림말에 꼭 대응하는 용어가 다른 곳에 없을 경우에도 유사하거나 참고가 될 용어를 찾아 비교해 준다.

다섯째, 발음의 경우 남과 북, 해외의 발음이 다른 경우에는 발음란에 표시한다. 남한에서는 장단, 북한에서는 고저라는 소리값의 변별력을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올림말마다 표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래어의 발음에 관한 일치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남한식 발음과 북한식 및 해외식 발음에 의한 다른 표기 형태를 각각 별개의 올림말로 다룬다.

여섯째, 뜻풀이는 가급적 간략하고 쉽게 풀어쓴다. 통일사전은 학문적인 성과를 담는 것보다는 실용적인 효용성을 중요시하므로, 빈틈없는 완결성을 갖춘 뜻풀이보다는 언중들에게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데, 언어현장에서 쓰이는 의미를 쉽게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남북간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사회 현실의 차이로 인하여 쉽사리 이해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다른 쪽 지역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말을 마련한다. 한 올림말의 뜻의 영역이나 용법이 남과 북, 해외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명을 추가한다. 어떤 용어가 다의성을 가질 때에는 출현빈도가 높은 의미값을 앞에 놓고 이어서 빈도순에 따라 번호를 매기며 뜻풀이를 한다.

일곱째, 통일사전은 순수한 언어사전이므로 남북 및 해외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요소는 배제한다. 체제이념적이거나 목적지향적인 성향이 짙은 뜻풀이를 지양하여 순수한 언어적인 풀이로 이루어지게 한다.

남북 환경용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일되기 이전의 시기부터 통일사전을 편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뿐만 아니라, 편찬된 사전을 양쪽 주민들이 활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통일사전의 편찬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편찬 이후 통일사전을 남북 양쪽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한다. 즉 「남북환경용어통일사전」의 편찬이 환경분야 전문서적 혹은 교재의 공동출판, 나아가 통일된 용어가 사용되는 환경분야 전문학술지의 발간 등으로 이어져갈 수 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언어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것인 만큼 환경용어의 통일로 시작한 남북한 언어의 통일작업이 다른 분야에서의 용어통일, 언어통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국가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남북환경측정단위·방법통일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우선 사업의 하나로 「남북환경측정단위·방법통일」을 추진한다. 남북한은 현재 상이한 환경측정단위·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상호 공감대 형성은 물론 서로의 환경정

보 및 그 해석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없다. 상이한 용어 및 측정단위·방법의 바탕 위에 발표되고 있는 남북의 관련 정보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상호 인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남북 환경교류·협력이 의미를 가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통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남북환경측정단위·방법통일」은 한반도 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사업으로서 통일된 환경측정단위, 측정방법의 안출을 통해 환경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보호·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남북의 계량적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남북환경측정단위·방법통일」은 정부당국간 합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민·관합동에 의해 추진하는 방안, 민간차원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 등 세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사업이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사업임과 동시에 경제적, 과학기술적 효과를 수반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남북의 민간이 협의·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환경분야 교류·협력의 기초가 되는 표준화사업임을 감안하고 동 사업이 여타 분야 측정단위·방법의 통일사업에 파급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당국이 이를 지원하는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사업을 반민·반관 형태인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경우 「한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에 이 사업을 전담할 「남북환경측정단위·방법통일작업반」을 구성한다.

「남북환경측정단위·방법통일」의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제1단계로 남북의 환경측정단위·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측정단위·방법의 통일에 관한 공동연구 등을 담당할 작업반을 남북 각자

의 지역에 설치한다. 둘째, 제2단계로 두 작업반이 상호 협력을 위한 지침에 합의한 후 관련 자료·정보를 교환·연구한다. 셋째, 제3단계로 두 작업반은 환경측정단위·방법의 통일에 관한 각자의 시안을 마련한 후 이를 상호 교환·연구하여 수정 시안을 마련한다. 넷째, 제4단계로 두 작업반이 상대방의 수정 시안을 검토한 후 향후 협력에 관한 지침을 확정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최종적인 통일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한다. 다섯째, 제5단계로 통일안에 합의함과 동시에 그 활용방안과 수정·보완작업에 관해 협의하고 협력을 지속한다. 이러한 과정은 <표 9>와 같다.

<표 9> 남북환경측정단위·방법통일 추진과정

① 예비접촉 → ② 실무접촉 → ③ 상호 실무작업반 편성 및 회의 1 → ④ 사업에 관한 지침(1) 합의 및 관련 자료·정보 교환 → ⑤ 각자 상대 자료·정보 연구 → ⑥ 각자 환경측정단위·방법에 대한 통일시안 마련 → ⑦ 상호 실무작업반 회의 2: 통일시안 교환·비교 → ⑧ 통일안 안출을 위한 협의 지속을 위한 지침(2) 합의 → ⑨ 협의 지속 → ⑩ 환경측정단위·방법 통일안 합의 → ⑪ 환경측정단위·방법 통일안의 활용방안과 수정·보완작업을 위한 협의

3. 남북환경네트워크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남북한 환경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환경네트워크」의 형성을 추진한다. 「남북환경네트워크」 형성의 목적은 남북한이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자연과 인간의 연대를 회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공동체의 건설을 촉진하는데 있다. 「남북환경네트워크」의 형성과정에서 환경측정단위, 환경용어 등의

표준화와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환경분야 교류·협력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환경통합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남북환경네트워크」의 형성은 남북 교류·협력의 접촉점·접촉선·접촉면·접촉공간을 확대하여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평화공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남북환경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은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남북환경네트워크」의 중점사업은 「남북지방환경네트워크」, 「남북환경정보네트워크」, 「남북산성비측정네트워크」, 「남북생물다양성조사네트워크」 등이다.

이와 같은 「남북환경네트워크」 사업은 남북이 각자의 지역에 상기 네트워크를 각자가 설치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는 방안(제1안)과 남북의 전문가가 함께 남북의 네트워크 설치에 참여하고 조사하며 결과를 종합하는 방안(제2안) 두가지가 있다. 남북한간 환경교류·협력의 분위기 전개에 따라 제1안에서 제2안의 방법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안에 입각하여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교류·협력의 추진과정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남북환경네트워크」 추진과정

① 예비접촉 → ② 실무접촉 → ③ 상호 실무작업반 편성 및 회의 1 → ④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지침 합의 → ⑤ 각자 자기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 설치 → ⑥ 각자 자기 지역에서 연구·측정·조사 ⑦ 상호 실무작업반 회의 2: 연구·측정·조사결과 교환·비교 → ⑧ 교류·협력의 관리와 지속을 위한 공동틀 형성 → ⑨ 교류·협력의 지속·확대

가. 남북지방환경네트워크

남북한이 지방적 수준에서 환경관리, 즉 환경오염감시 및 정보수집 등에서 공동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환경현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지방적 차원에서의 환경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남북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분야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남북지방환경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지방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지방적 차원에서의 환경현황 파악과 환경대응책 모색을 용이하게 하며, 지방네트워크를 통해 환경관련 자료·정보의 교환을 활성화하여 국가적 환경협력정책의 결정능력을 강화시킨다.

국가 및 국가간 환경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의 환경문제에 관하여 지방정부는 원거리에 위치한 중앙정부보다 문제의 내용과 원인을 더욱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또한 일반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어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환경의식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재정이 취약하고 전문인력과 전문행정능력이 결여되고 정보체계가 미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북한도 환경관리행정력의 향상을 위해 Agenda 21의 후속 이행조치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Local Agenda)을 수립하면서 지방당국의 노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나진-선봉무역지대가 자체적인 환경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남북지방환경네트워크」의 주안점은 남북 지방정부의 환경관리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단계적 추진과정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재정, 기술, 장비, 자료·정보 등을 지원한다. 제1단계에서는 우선 네트워크를 관장할 작업반을 남북이 각자 설립하

여 각 지방정부의 환경관리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교환한다. 특히 법·규제적 틀의 제도적 실태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공유 환경자원과 공동 환경문제에 대한 관계, 지방경제와 자치단체간의 관계, 기술·환경교육·환경예방의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제2단계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지방당국의 환경기술 및 관리 능력, 환경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의 총체적 능력, 오염원조사·환경영향평가·지방적 환경계획·환경통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컴퓨터화된 환경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할 능력 등이다.

제3단계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이 지방환경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환경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황해도와 경기도간, 남북 강원도간 혹은 나진·선봉무역지대와 우리의 수출자유지역간에 환경관리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고 환경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한다. 이 경우 서독의 함부르크시가 동독의 드레스덴시와 협력(1989년 11월)하여 드레스덴시의 대기오염관리능력 향상을 모색한 전례를 참조한다.

나. 남북환경정보네트워크

남북간에 전자매체를 통해 환경관련 정보 및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남북환경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남북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문적, 정책적 틀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재생산을 촉진한다. 이 경우 1990년 UNDP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보교환과 보급을 활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SD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SDN은 전자우편(E-Mail)과 전자회의체계를 통해 관계자가 대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사용하는 체계로서 통상의 우편체계보다 저렴하고 다량의 정보를 광범위한 범위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여하는 제한된 사람에게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는 모두에게 시간적 손실이 없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즉시 전체 네트워크에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우편 및 전화통신하부구조가 취약한 지역의 관심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남한은 북한이 SDN 국가센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Hardware 및 Software체계를 구입하는데, 그리고 그 사용을 위한 기술적 훈련에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한다

한편 남북한간 환경정보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1975년 UNEP에 의해 설립된 “국제정보조회체제(INFOTERRA)”[15]와 1982년부터 UNEP가 WHO 등 관련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지역환경감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환경감시체제(GEMS: 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15)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정보교환을 위한 국제적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 UNEP에 의해 1975년 INFOTERRA가 설립되었다. 정보(Information)와 지구(Terra) 두 단어의 합성어인 INFOTERRA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환경분야의 계획, 대책, 연구, 기술개발 등에 관계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교류의 요망에 부응하고자 만들어졌다. 현재 참여국가내에 국가대표기관(NFP: National Focal Point)이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정보센터(Regional Service Center) 및 특별권역정보원(Special Sectoral Sources)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국립환경연구원이 INFOTERRA 활동의 NFP를 맡고 있다.

다. 남북산성비측정네트워크

남북이 산성비의 방출, 이동, 침전, 영향에 관한 정보교환과 감시노력에 협력하기 위해서 대기중의 먼지, 아황산가스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오염도자료를 현재시각(Real Time)으로 온라인으로 송·수신하는 대기오염자동감시체제(TMS)를 운영하고 강우중의 산성도(Acidity)를 측정하는 「남북산성비측정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동북아 역내의 월경성 대기오염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산성비이며, 그 주요 원인은 중국의 석탄사용 발전소 - 특히 북부 및 남동부지역 - 에서 방출되는 유황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불충분한 감시망과 생태적 연구의 미비로 인하여 역내 산성비의 범위, 원인, 영향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남북산성비측정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중요 지역에 산성축적측정·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측정된 자료·정보·경험을 교환하여 종합적으로 집적·분석하며, 상호 산성비관리능력을 배양하는데 협력한다. 이 경우 동서독이 대기오염의 정화를 위해 측정 및 송신시설을 설치하는데 협력했던 사례를 참조한다.[16]

16) 1989년 7월 6일 「동독내 환경보호프로젝트 실행에 관한 서독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성 장관과 동독 내각자문회의 의장대행 및 환경보호·수리성장관의 공동 성명」은 동독에 의해 발생되는 이산화황(SO_2)과 산화질소로 오염된 대기상황에 관한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서독과 서베를린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대기오염측정을 위한 9개의 대기측정소(Luftmeßcontainer) 건설에 동독이 1백 5십만 마르크(D), 서독이 7백만 마르크(DM)를 투자하였다.

라. 남북생물다양성조사네트워크

남북이 생물다양성 보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남북생물다양성조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반도내 절멸위험이 있는 종, 중요 서식지 등과 같은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기본정보를 조사·연구·취합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한반도내 동·식물계의 보존전략을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생물다양성조사는 제1단계로 남북이 각자의 지역에 전문가로 구성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조사, 희귀 및 절멸위험종의 위치 및 분포 조사, 생물다양성 상실의 원인 조사, 잠재적으로 상업성이 있는 의료 및 식용식물 조사,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호조치와 서식지 복원기술 등의 분야에서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제2단계로는 이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과 절멸위험종에 관한 포괄적인 한반도 DB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어서 제3단계로서 생물다양성조사를 통해 남북한간에 협력의 분위기가 성숙되면 남북 생태계정보의 공동 분배를 위해 남북 공동의 「남북생태계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① 한반도생태정보센터(KEIC: Korean Eco-Information Center)의 비무장지역내 설치, ② 지역생태정보센터(REIC: Regional Eco-Information Center)의 서울 및 평양 설치, ③ 지방생태정보센터(LEIC: Local Eco-Information Center)의 한반도 주요 생태계지역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KEIC-REIC-LEIC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반도 생태계를 감시하여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Ⅵ. 남북환경공동체를 위한 남북경협

1. 한반도청정개발체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남북간에 환경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현재 북한의 실정에서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여유도 경제적·기술적 여력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경제개선 전략이 환경개선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 등을 인식한 바탕 위에 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를 설정하여 여기에 남북한 교류·협력을 양자적·다자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남북환경협력의 활성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현재 극심하게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인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경우에 북한의 반응과 협력에의 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필요한 기술·훈련·자원을 북한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경제침체를 완화시키면서 환경손상도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북한이 자체의 노력을 위한 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체제의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략은 환경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그 해결의 모색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각 사회가 처한 상황에 준하여, 각 사회가 관심을 크게 가지는 분야에 집중하여 직·간접적으로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장기적 환경협력방안으로서 「한반도청정개발체제」(KCDM: Korea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즉 대기부문의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7]

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렸던 제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7)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이행안이 타결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 준수, 할당량에 미달한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온실가스 배출 통계방법 등이 결정되었다. 한국은 1999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연간 4억 1천만톤이나 배출해 세계 10위를 차지하였고, 10년 내에 세계 7위의 배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조속히 동참하라는 선진국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재정적 지원이 보장되는 개도국으로써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참여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여 국내실정에 부합하는 의무감축량을 자발적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KCDM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국가정책방향이라 판단된다.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축성체제, 즉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그리고 청정개발체제를 도입하였다. 그 중에서 배출

17) KCDM 논의와 관련하여 곽승준, “남북한 환경협력 및 재원조달방안,” pp. 3~8을 중점적으로 참조하였다. 그외 한국원자력문화재단·매일경제신문사, 「지구온난화문제에 관한 심포지엄 논문집」(1998); 외교통상부,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 참가보고서」 (서울: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1998) 참조.

권거래나 공동이행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반면에,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KCDM을 추진하자는 것은 향후 남한이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속서 I 국가, 북한이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개도국이 될 것이라는 가정아래, 대기분야에서 KCDM을 중·장기적인 남북환경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KCDM 형성을 위해 남북환경협력을 다음의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첫째, 에너지효율성 증대사업이다. 북한의 에너지사용 효율성 증대, 에너지기술·설비수준의 개선을 위해 산업부문의 산업용모터효율 증대사업, 공정개선사업, 가정·상업부문의 조명 및 냉난방효율 증대사업, 수송부문의 연료전환 및 효율 증대사업 등을 추진한다.

둘째, 에너지공급 증대사업이다. 에너지공급의 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부문에서 발전용보일러 효율증대사업, 석탄정제사업 및 송·배전효율 개선사업 등의 발전효율 증대사업, 풍력이나 조력과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셋째, 해외조림사업이다. 온실가스 저감, 생물다양성 보존, 토양침식방지, 수자원함양기능 향상, 통일환경비용 절약 등을 위해 북한과 해외조림사업을 추진한다. 1993년부터 한솔포렘 등 국내 기업들이 호주, 솔로몬군도 등에 해외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급격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 황사발생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중·서부지역 등에서 조림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KCDM을 통한 남북환경협력은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내 온실가스 배출저감이라는 환경적 이익의 시너지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표 11>은 KCDM 도입의 의의와 편익을 보여준

다. 한편 KCDM 형성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의 적용규정과는 달리 한반도 특수상황을 고려한 차별적인 적용기준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남한이 기존의 부속서 I 국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의무감축부담을 질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청정개발체제가 적용되더라도 북한의 관심은 온실가스 저감보다는 에너지원의 확충과 이를 통한 산업가동률 제고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환경적 유인과 북한의 경제적 유인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산업생산력 증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에너지효율성 증대와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유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18]

18) 손기웅, “북한 에너지효율성 및 환경개선 지원방안,” 「입법조사연구」, 251호(1998), pp. 286~314 참조.

<표 11> 한반도청정개발체제 의의와 편익

KCDM 적용배경	• 부속서 I 국가(ANNEX I)로의 편입 압력 고조 • CDM 출범에 따른 국내대비책 마련 시급
⬇	
KCDM 적용의 의의	• 청정개발체제 수립목적에 부합 • 남북한 환경협력방안의 기본원칙에 부합 • 통일 후 환경통합비용의 절약
⬇	
KCDM을 통한 남북한 실익분석	• 경제적 편익 남 한 - 온실가스 배출저감비용 절감 - 배출저감의무 달성에 유연성 확보 - 신기술에 대한 시장 확보 - 새로운 투자기회 확대 -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대한 국내적 저항 최소화 북 한 - 외자유치 - 기술이전 - 고용창출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환경적 편익 - 한반도내 온실가스배출 저감
⬇	
KCDM 적용가능사업	• 에너지효율 증대사업 •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부문사업 • 해외조림사업 등

2. 유기비료 대북지원

현재 남한에는 축분, 음식물쓰레기, 슬러지 등과 같은 유기물질이 너무 많아서 수질 및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고밀도로 배출되는 축분 등의 유기물질은 과거와 같은 자가퇴비화 방식을 적용·처리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으며, 저가의 화학비료 공급체계는 축분비료의 수요를 극도로 축소시켰다. 그 결과 적정처리를 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남한의 고농도 유기물질들은 지역의 토양과 주변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 기계적으로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공급하여 상수원 수질 등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공공재정으로 대량의 고농도 축산폐수를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에서는 그와 같은 유기물질이 너무 적어서 토지의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상당 기간 무리한 개간으로 인하여 토양에 유기물질이 적어 토질이 극도로 피폐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토지의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농업은 극도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다.

북한은 절실한 지력의 회복을 위하여 남한으로부터 상당량의 화학비료를 무상 공급받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단기적 조치들은 일시적인 수확량 증대에만 다소간 효과가 있을 뿐 북한 농업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편 남한 역시 대북무상지원의 형태로 비료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남한과 북한의 농업위기는 이상과 같이 서로 상이한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의 WTO체제하에서는 인위적인 농업보조금이 감축 또는 중단

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고, 결국 화학비료의 구매에 지원되던 정부보조금 등은 폐지될 상황이다. 이에 비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한 토양복원에 사용될 퇴비 등 유기비료 구매에는 오히려 정부보조금은 적극 지원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어서 유기비료의 생산 및 공급조건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될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결국 화학비료의 구매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여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를 대체할 유기비료의 구매가격은 인하되어 수요가 크게 증가될 수 있다.

이상의 고려하에 남북한이 맞고 있는 농업위기를 상호 협력적 관계로 해결하기 위해 남한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과 같은 다량의 유기성 폐자원을 유기비료화하여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이 남북한간에 자원순환형 농촌공동체를 형성하여 북한의 식량증산과 한반도환경개선에 적극 이바지하는,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에 적극 기여하는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1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국내에서 발생되는 연간총축분은 3,502만톤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육우분은 약 1,270만톤(36.2%), 젖소분은 약 700만톤(20%), 돼지분은 약 1,156만톤(33%), 닭분은 약 376만톤(10.7%)인 것으로 파악된다.[20] 이와 같이 막대한 양으로 발생·배출되는 축분은 고농도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정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된다면 극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육우분의 경우 BOD가 약 25,000ppm, 젖소분은 약 21,000ppm, 돼지분은 약 60,000ppm, 닭분은 약 65,000ppm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19) 이와 관련하여 김정훈, "남북한 환경공동체와 자원순환관리"(환경부 에코-2프로젝트 재활용산업팀회의 발제논문, 2001)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였다.

20) 김창길, "가축분뇨처리의 경제성분석," 「농촌경제」, 22권 3호(1999), pp. 55~56 참조.

한편 연간축분발생량 가운데 3대 비료성분인 질소는 약 20만톤, 인산은 약 18만톤, 칼리는 약 17만톤 정도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화학비료의 대체가치로 평가할 경우 약 1,345억원의 경제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21] 여기에 축분을 유기비료화함에 따른 축산폐수처리비용의 절감액을 더할 경우(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비용은 연평균 7조 2,020억원에 달한다) 엄청난 경제가치를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안정화된 유기비료 생산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하고, 양질의 축분비료의 공급이 확대되는 단계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유기비료 공급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환경의 개선과 비용절감은 물론, 북한의 유기농업을 적극 지원하여 식량증산과 북한농업의 구조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의 유기비료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과도한 농업생산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토양 사막화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유기비료를 적극 확대 공급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3. 북한 환경인프라 개선과 재활용품 지원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남북경협사업의 다른 사례로서 북한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과 남한내 재활용생필품의 대북지원을 들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상수도, 하수도,

---

21) 전학문, 「유기질폐기물의 발효처리와 퇴비화」 (서울: 아카데미서적, 1994), pp. 19~20 참조.

폐수처리장 등 환경인프라시설이 절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평양시조차 1개소의 하수처리장이 있을 뿐, 대도시에도 단순 배수를 위한 관개시설만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주요 하천수질도 상당히 오염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두만강은 5급수, 압록강은 3급수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도시와 남북한의 경협공단에 환경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북한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도로·통신망과 함께 기초적 사회기반시설로서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자체적으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한다. 이 경우 정부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환경인프라 사업단을 구성하여 자문·지원할 수 있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경협공단의 경우에는 남한과 동일한 폐수처리기준을 적용하고 폐수처리장의 건설시 지원기준(국고 50%)을 적용한다.

한편 민간기업이 자기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북한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투자보장협정 등)를 정비한다. 이 경우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도입을 추진하고, 투자기업이 일정기간 운영·관리 후 양도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한다.

다음으로 재활용가능 생활필수품의 대북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 남한에서는 전반적인 재활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은 수요부족과 경제성 저하로 재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폐플라스틱·유리병 등은 재질·색상의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폐타이어는 처리시설 및 사용처의 부족으로, 중고 폐가전품의 경우에는 사용의 저조로 재활용이 미흡하다. 특히 물통·함지박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

의 경우, 국내수요부족으로 18만톤(1999년말)이 적체된 상태이다.

한편 북한은 자원난으로 인하여 높은 재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폐생필품 자체가 부족하다. 따라서 북한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남한내 환경개선을 위해 적체된 각종 재활용 생활용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남북을 연계하는 자원순환형 환경공동체형성의 시범사업으로서 재활용생필품의 대북지원은 남북한 생활양식의 차이를 활용한 한반도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내 재활용 생활필수품 - 플라스틱 제품 등 생활필수품, 냉장고 등 생활가전제품 등 -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을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주도하고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 폐비닐 가공제품(물통·농수로관 등)을 싼 가격으로 북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부지와 인력, 남한의 자금과 기술을 결합하는 재활용시설을 북한지역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나아가 향후 남북 합작투자로 중국·러시아 등에 진출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Ⅶ. 결 론

남북환경공동체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통일 전후 환경비용의 감소란 현실적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 남북환경공동체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의 사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형성되어야 할 중심축의 하나이다. 또한 남북환경공동체는 상이한 정치체제로 인한 남북한의 대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남북한 사회가 공동의 선(Public Common Good)을 위해 협동적인 역할관계를 수립해야 할 무대이다.

남북환경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한반도의 환경통합은 통일에 의해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통일 이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환경공동체를 달성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성과물이다. 이렇게 볼 때 당면한 과제는 남북환경협력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환경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도 불충분한 현 상태에서 남북환경공동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로 귀결된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환경문제가 상호 보완을 이루면서, 동시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실리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환경교류·협력이 제도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의 환경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모형의 제시로 연결되도록 추진하여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이 환경협력적 측면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의 진전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이 좀더 실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에서 환경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독일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가 환경문제라는 사실[22]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반도 주민과 그 후세들, 우리 민족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에 있으며, 그것의 바탕이 환경조건의 개선에 있음이 통일로 향하는 도정에 동참하려는 모든 이에게 깊숙이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먼저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내재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지역적·지구적 환경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보호와 관련한 선진기술과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개발도상국인 북한과 중국, 선진국으로의 진입문턱에 서 있는 한국 등 국가적 다양성을 지닌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은 역내 환경협력을 위한 중간자, 조정자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그러한 도정에 북한의 동참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환경공동체의 궁극적인 실현, 한반도 환경의 궁극적인 질적 개선은 남북간에 정치·군사적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대립이 지속되는 한 비생태적인 군사분야에 대한 인적, 물적 가치의 배분은 계속될 것이며, 환경오염·파괴가 심화되고 환경개선을 위한 인적·물적 투자여력은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한반도의 환경개선이 경제개선은 물론 정치·군사적 개선과 맞물려 있으며, 환경운동이 평화운동과 직접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인식

22) 독일은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해 약 1백조원을 투입하였다. 조승국, “독일 환경통합의 사례와 교훈,” 국회환경경제연구회·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북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남북 환경·에너지 경협방안」(2000), pp. 7~13 참조.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환경이 전면적으로 개선되기 위한 우선적인 전제는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어 평화공존의 남북관계가 형성되어 군비통제·군비축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 삶의 터전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적·총체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손기웅.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방안: 양자적·다자적 차원」.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_____. 「북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농업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서울: 통일연구원, 1997.

_____.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외교통상부.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 참가보고서」. 서울: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1998.

전학문. 「유기질폐기물의 발효처리와 퇴비화」. 서울: 아카데미서적, 1994.

한국개발연구원.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종합계획(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9.

한국원자력문화재단·매일경제신문사. 「지구온난화문제에 관한 심포지움 논문집」, 1998.

Taylor, Michael. *Community, Anarchy and Liber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2. 논 문

곽승준. "남북한 환경협력 및 재원조달방안." 국회환경경제연구회·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북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남북 환경에너지 경협방안」, 2000.

김정훈. "21세기 남북한 환경공동체 건설의 방향성."(한국정책학회 동

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

_____. “남북한 환경공동체와 자원순환관리.”(환경부 에코-2프로젝트 재활용산업팀회의 발제논문, 2001).

김창길. “가축분뇨처리의 경제성분석.” 「농촌경제」, 22권 3호(1999).

변병설.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법제 정비방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친환경적 국토관리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집」, 2000.

_____. “통일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 전략.”(통일연구원 초청간담회 발제문, 2001).

손기웅. “북한 환경문화 연구: 환경정책과 환경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_____. “북한 에너지효율성 및 환경개선 지원방안.” 「입법조사연구」, 251호(1998).

_____. “남북환경협력의 의의와 추진 기본방향.” 환경운동연합.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문집」, 2000.

_____. “베를린선언의 의의와 과제.” 통일연구원. 「베를린선언과 남북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손기웅·박영호. “남북경제공동체 의의·개념 및 향후 추진방안: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협의 준비위원회.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방안」(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심포지움, 2000).

조승국. “독일 환경통합의 사례와 교훈.” 국회환경경제연구회·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북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남북 환경·에너지 경협방안」, 2000.

3. 기 타

「기상과 수문」(농업출판사).
「국토」(중앙과학기술통보사).
「기술혁신」(중앙과학기술통보사).
「전력」(중앙과학기술통보사).